

서울특별시 마이스(MICE)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37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박상혁,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박 칠성, 서상열, 서준오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운, 이상욱, 이새날, 이용균, 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 장태용, 정지웅, 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56명)

1. 제안이유

- 급속하게 성장하는 마이스산업의 환경변화를 행정에 반영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,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규정에 마이스 육성 및 지원 근거 법령 명시 (안 제1조).
- 나. 마이스(MICE)산업 개념에 국제이벤트를 추가 (안 제2조).
- 다.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을 수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 (안 제16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전시산업발전법
」

서울특별시 마이스(MICE)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이스(MICE)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”을 “조례는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전시산업발전법」에 따라”로, “마이스(MICE)산업”을 “마이스(MICE)산업을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제1호 중 “전시회(Exhibition)”를 “전시회(Exhibition) 및 국제이벤트(Event)”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실·본부·국장”을 “실·본부·국장 및 전담조직의 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4항 중 “부서장이 된다”를 “부서장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<u>마이스(MICE)산업</u> 육성하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 촉진, 도시 브랜드 제고,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, 관광·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① (생 략)</p> <p>1. “마이스(MICE)산업”(이하 “마이스산업”이라 한다)이란 회의(Meeting), 포상관광(Incentive Travel), 컨벤션(Convention), <u>전시회(Exhibition)</u> 산업과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.</p> <p>2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16조(육성위원회 구성)</p> <p>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은 MICE산업육성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<u>실·본부·국장</u>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마이스산업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마이스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.</p> <p>< 신 설 ></p>	<p>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전시산업발전법」에 따라 ----- <u>마이스(MICE)산업을</u> -----</p> <p>제2조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전시회(Exhibition)</u> 및 <u>국제이벤트(Event)</u>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육성위원회 구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<u>실·본부·국장</u> 및 <u>전담조직의 장</u>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<u>으로 한다.</u></p> <p>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</p>